

전주지방법원 2021. 4. 21 선고 2019가단2591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

담당변호사 우승원

피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변론 종결2021. 3. 31.

판결 선고2021. 4. 21.

주 문

1. 피고와 C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3. 4.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19. 3. 4. 접수 제165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소장 기재 청구취지 중 '2017. 3. 4.'은 '2019. 3. 4.'의 오키로 본다)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C가 기업은행 전주서신동지점으로부터 두 차례 대출을 받음에 있어 C와 2016. 12. 15.과 2018. 5. 30.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, 위 은행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.

나. C가 위 각 대출금 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2019. 3. 1.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, 원고는 기업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고, 2019. 4. 8. C를 대위하여 기업은행에게 합계 46,440,138원을 변제하였다.

다. C는 2019. 3. 4.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19. 3. 4. 접수 제1652호로 근저당권자 피고, 채권최고액 11,064,703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'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원고와 C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위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,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직전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, 원고가 C를 대위하여 기업은행에 대출금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C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, 9호증의 각 기재와 각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면, C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.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원고 등

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피고는, C와 식자재 납품거래를 해오면서 지급받지 못한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사해행위인지 알지 못했다고 다룬다.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.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피고가 C와 식자재 거래를 해오면서 C에 대하여 미수금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, 피고가 C와 오랜 기간 동안 거래해왔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상당한 액수의 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C의 재정적 어려움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,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C의 이자 지급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뒤늦게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.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다. 취소 및 원상회복

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곽경평

별지